

## 남녀유별 禮의식 [內外法] 이 복식생활에 미친 영향

-조선후기 남녀 복식생활을 중심으로-

이 경 미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urtesy of Avoidance of the Opposite Sex on Costume

-Focused on Costumes of Man and Woman in the Late Chosun Dynasty-

Kyung-Mee Lee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10. 10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the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in the costumes of men and women throughout the overall acceptance process of "Naewaebub" in the late "Chosun Dynasty" in which the notion of "Naewae" is more prosperous than any other period in Korean history.

Originally the distinction between man and woman was not intended to display the high and the low but to show the mutual respect according to each duty. As time goes on, that ideal became gradually changed to heighten the man and lower the women especially in "Han" period of China. There was the ideal of distinction in the ancient times in Korea. Until "Koryo Dinasty" the community has the system of blood-tied that put together maternal and paternal. "Karye" was introduced in the late "Koryo Dynasty" and accepted to the stereotype of morale in the "Chosun Dynasty" and there seemed to be "Samgang" and "Oryun" at once. Many restrictions was imposed to behavior in women like rules of prohibition in attending the temple and concealment of woman's face and was recognized to rule of distinction between man and woman. Confucian life custom has been settled to Korean society throughout the late 16th century and 17th century and there were some appearances in the housing construction which divide the residences of man and woman. The characteristics in the costume from the avoidance of opposite sexes are clear in the structure of clothes changed from similar style to different style. The examples of those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The costume in man was developed to advanced "Pyounbokkwan" and "Pyounbokpo" as social action of man prospered. Meanwhile the trousers which had been the same in the man and woman were separated to different trousers between man and woman. The costume life style of woman was changed to using the a hair whirl, hiding the face in the street and overlapping the innerwear under the skirt which was extension of woman's closed life style in late "Chosun Dynasty".

Kyung-Mee Lee, e-mail: evangelline@hanmail.net

\* 본 연구는 2단계 BK21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Key words: Ye(예; 禮), Naewaebub(내외법), distinction of sex(남녀유별), head dress for concealment of face(내외용 쓰개)

## I. 서론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복식은 당대의 지배적인 담론과 생활관습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하게 된다. 특히 동양에서 근대 이전의 시대에는 우주관이나 인간관과 같은 지배적인 담론의 영향에 강하게 종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관념적인 사유로부터 복식생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는 규칙이나 약속이 성립될 수 있는 데 동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규칙 혹은 약속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禮)라고 할 수 있다. 예란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오랜 생활관습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계약적 생활규범<sup>1)</sup>이다. 예는 도덕과 법의 중간적 위치에서 강제성보다는 긍정적 권유를 특징으로 하여 동양의 유교사회에서 더욱 발전하였다.<sup>2)</sup>

동양에 있어서 예의 본질은 상하 귀천의 준비 등급을 구별하는 데 있다. 등급이 분명하면 사람들은 각기 공경하게 되고 사람들 간 관계가 화순하면 서로 친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sup>3)</sup> 예로써 사람들 간 준비 등급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외재적 규정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강조되어 왔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복식생활에 대한 예의식에서도 준비(尊卑)에 따른 신분별 구별의식, 성별에 따른 남녀별 구별의식, 어른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른 구별의식 등과 같은 사회 전반에 걸친 구별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sup>4)</sup> 이 중 준비에 따른 신분별 구별의식은 복식제도로서 정립되었고 성별이나 장유(長幼)에 따른 구별의식은 대체로 관습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성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성별에 대한 규정상 용어로서 内外法을 들 수 있다. 내외(內外)란 원래는 안과 밖이라는 뜻이지만 '夫婦'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동사로

'내외하다'로 쓰이기도 한다.<sup>5)</sup> 남녀가 서로 내외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孟子』의 오륜에서 '別'의 개념으로 먼저 나오고 있으므로 그 이전부터 있어왔다고 보여진다. 이 내외법은 조선시대에는 구체적으로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금한다'는 관습법 및 법의 의미로 사용되었고,<sup>6)</sup> 조선후기로 가면 이 내외법에 의해 복식에서는 여자의 폐면이 장려되어 심지어는 옷으로 입었던 장의(長衣)를 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건축에서도 보여지는데 반가의 건축에서 사랑채 안채를 나누어서 짓고 공간과 생활 자체에서 남성은 사회성이 강한 사랑채의 생활로 여성은 폐쇄성이 강한 안채(규방)의 생활로 대별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남녀의 차이가 복식의 구조와 복식생활에 반영된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남녀의 머리 모양이 다르고 여자가 치마를 착용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가 전 국민들에게 보편화되고 복식전반에 반영되었던 시기로서, 남녀를 구분한다는 인식이 그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강조되었던 조선 후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복식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내외법의 전반적인 수용을 당대의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남녀 복식생활의 일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내외법의 일반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외법의 영향이 반영된 남녀 복식생활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선행 연구와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사진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남녀유별의 '別'의 해석적 변화

내외법의 기원이 되는 남녀유별 혹은 부부유별에서 '別'이란 애초에 차별이 아니고 다르다는 개념으로 출발하였다. 남자와 여자는 음과 양이 서로 다르

듯이 모든 면에 있어서 속성과 성격 및 가치판단이 달라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别의 개념이 조선조의 내외법으로 정착하기까지 해석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직분의 차이와 상호 공경을 강조하는 '別'

남녀유별 혹은 부부유별에 대해 기록된 문헌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승혜(1998)는 유교의 성(性) 개념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 이미지는 남녀유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오륜의 하나로 중시되어온 부부유별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확인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8)</sup> 이를 통해 가족 관계내에서 남녀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으로서의 부부유별이 보다 확대되면 남녀유별로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부유별이 기록상 가장 먼저 언급되는 문헌인 『孟子』에서의 '別'의 개념은 부부 간의 직분의 차이와 상호 공경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맹자(추정 BC372~289)의 등문공장(騰文公章)에서는 書傳舜典을 인용하여 오륜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부유별 개념이 문헌상 처음 등장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사는 방도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도 교육이 없으면 새와 짐승에 가까워지는데 성인이 그 점을 근심하여 설(契)로 사도(司徒)를 시켜서 인륜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것은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다른 남녀와의 분별이 있어야 하고,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는 서열이 있어야 하고 벗들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9)</sup>

맹자는 有別을 부부 이외의 다른 남녀와의 분별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승혜는 『논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에 따른 공경의 의미인 '원(遠)'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遠)의 개념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타자에 대한 공경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하였다.<sup>10)</sup>

다음으로 주나라 말기부터 진한 때까지의 예제를 적고 있는 예기(禮記)의 제12 내칙(內則)은 가정

안에 있어서의 예의범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 중 부부유별과 관련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는 집안의 일을 말하지 않으며, 여자는 밖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 또 제사 때나 초상 때가 아니면 남녀는 서로 그릇을 주고받지 않는다.... 남녀는 우물의 물을 함께 푸지 않으며 욕실도 함께 쓰지 않으며 잘 때에 자리를 함께 쓰지 않으며 물건을 빌리지도 않고 의상(衣裳)도 함께 쓰지 않는다... 밤에 집안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등불을 사용하고 그것이 없으면 가지 않는다. 또 여자는 집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얼굴을 가린다. 그리고 밤에 밖으로 나갈 때에는 등불을 사용하고 그것이 없으면 나 가지 않는다. 도로에서 남자는 우측을 통행하고 여자는 좌측을 통행 한다.<sup>11)</sup>

예는 부부 사이의 도리를 삼가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에는 안과 밖의 구분이 있게 한다. 남자는 밖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에 거처한다. 안채는 깊숙하게 하고 안과 밖의 사이에는 문을 두어 혼서(閨侍)가 사람의 출입을 감시하게 한다. 남자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며 여자는 밖에 나오지 않는다..<sup>12)</sup>

자식이 성장하여 여섯 살이 되면 수의 이름과 방향의 이름을 가르친다.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자리를 같이하여 앉지 않으며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다...<sup>13)</sup>

무릇 남자는 절할 때에는 왼손을 위로 한다. 무릇 여자는 절할 때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sup>14)</sup>

예기의 남녀유별, 부부유별의 개념은 맹자보다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나타나는데 예기 역시 남녀의 직분별 구별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양의 남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음양오행설을 들 수 있는데, 남자를 양으로, 여자를 음으로 보는 음양오행설을 통해 볼 때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를 양과 음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하의 개념이 아니고 상징성을 지닌 구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남녀유별, 부부유별, 내외의 개념이 처음 성립될 때에는 직분의 차이와 상호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別'의 개념이었다. 이러한 남녀유별이 중국의 한대에 접어들면서 남존여비의

개념으로 바뀌어 간다.

## 2. 차별적 개념으로서의 남존여비를 강조하는 ‘別’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여야 한다거나 남자와 여자는 서로 직분에 충실히야 한다는 이전 시대의 부부 유별 개념은 한나라에 오면 차별적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한대의 사상가인 동중서(BC198~106)는 양존음비(陽尊陰卑)라 하여 양을 귀한 것으로 음을 비천한 것으로 규정하고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도 남성은 비록 비천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양에 해당하고 여성은 비록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음에 해당한다고 하는 극도의 남성중심주의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sup>15)</sup> 이와 같이 변질된 개념은 한대 이후 ‘삼강’의 윤리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음은 비천해서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고.. 양은 존귀해서 아무 것에도 매어 있는 바가 없다”<sup>16)</sup>는식의 불평등 윤리관으로 변질되게 된다.<sup>17)</sup>

그런데 중국의 남녀유별 의식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음 장을 통해 따로 보고자 한다.

## III. 우리나라의 남녀유별의 변천

### 1. 조선시대 이전의 남녀유별

중국의 역사서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들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었다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弁辰의 풍속 중의 “...시집 가고 장가가는 데 있어 모든 예속이 남녀의 구별이 있다...”<sup>18)</sup>는 내용과 梁書 신라전의 “...남녀의 구별이 있었다..”<sup>19)</sup> 등의 기록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 중에 남녀 구별의식이 상고시대부터 존재해 왔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부부유별, 즉 남편과 아내의 직분상의 구별과 남녀유별, 즉 음양오행에 의한 음인여와 양인 남을 구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그야말로 ‘別’의 개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여자의 지위가 조선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계나 모계 어느 하나의 계통을 따르는 친족 집단 공동체가 아니라 부모계 뿐만 아니라 처계까지도 아우르는 혼재된 혈연 공동체적 내용이 고대 이래 고려시기까지의 사회생활을 이끌었던 기본적 질서였다. 예컨대, 고려시대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하는 경우 부부 양쪽 다 재혼이 가능했고, 노비와 재산이 자녀에게 균분 상속되었으며, 동성동본혼이 많았고 10촌혼의 사례도 있다.<sup>20)</sup> 그러나 고려 말에 부계의 직장자 중심의 종법적 예론을 중심으로 하는 주자의 『가례』가 들어왔고 조선이 이를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례』에 내재하는 가족윤리인 삼강오륜이 조선초기부터 장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녀 성별을 차별화하지 않고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부계 모계 처계로 하는 혈족의 친족집단개념으로 살아온 사회에서 가례의 종법 체계로 빠르게 이행한 것은 아니었고<sup>21)</sup> 남녀의 직분별 상호존중 역시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삼강에서의 남존여비와 오륜에서의 남녀구별이 공존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16세기까지는 여자의 지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조선후기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여진다.<sup>22)</sup> 또한 조선후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항 직후 외국인인 길모어는 “상류사회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반드시 경어를 썼으며 결코 하대하지 않았다. 여인이 천대받기는커녕 특히 내당 마님의 존엄성은 절대적이었으며, 한 가문의 영광이나 몰락은 그의 처신에 달려 있을 만큼 그의 존재는 막강했다. 여성의 비천한 대접을 받는 것은 주로 하층 계급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한국사회와 보편적 현상은 아니었다”고 하였다.<sup>23)</sup>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유교적 이념이 근원적으로 남존여비로 변질되어 조선시대에 적용된 것이 아니고 앞서 언급한 대로 남존여비와 직분적 상호존중의 구별이 동시에 존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 2. 조선시대의 내외법

### 1) 경국대전의 내외법 규정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전 실록에서 보이는 내외법에 관한 논의로는 세종 11년 2월 신사조에 사헌부가 광화문 밖 등지에 내 걸도록 건의한 각종의 금제들 중에서 “부녀자가 사찰에 가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중이 과부집에 출입함을 금지할 것이며, 양반의 부녀자로서 모첨을 견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sup>24)</sup>의 내용이다. 그 후 성종 때 완성되는 경국대전 형전 금제(禁制)조에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 토족(土族)의 부녀로서 산간이나 물가에서 놀이 잔치(遊宴)를 한 자는 장일백(杖一百)에 처한다. 종친(宗親)의 처(妻), 여(女), 당상관(堂上官)의 모(母), 처(妻), 여(女), 자부(子婦), 및 유음자(有蔭者)의 신부(新婦)외에 덮개 있는 교자(有屋轎子)를 사용하는 자는 장팔십(杖八十)에 처한다.”는 항목으로 법제화된다.<sup>25)</sup> 경국대전에서 구체적으로 ‘내외법’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즉 婦女上寺 금지, 幣面의 의무화, 轎子 사용의 준칙, 부녀자의 행락 금지, 거리 행사 관람 금지 등 여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이므로 여자에 대한 행동 규제에 관한 법이라고 하여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내외에 관한 규정으로 인식해 온 듯하다. 이는 개화기 이후 내외법 철폐론의 행동지침으로 폐면용 장옷 폐지를 함께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남녀 구별이 경국대전의 금제조항으로까지 규정되게 된 것은 조선의 건국이념인 유교적 예제를 철저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지배 세력들의 이상에 따른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당대 우리 사회의 실생활 풍속이 그와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금제조항은 실행하고자 하는 이념이 실생활에서 잘 적용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명목적으로 사회질서와 신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당시에 유교적 윤리에 적절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태종, 세종조에 간통 및 近親相姦의 사건이 유난히 많아

서 교화적인 권장만으로는 풍속의 순화를 기대하기 어려움이 빈번히 논의되었고 그 결과로서 여자들이 내외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三寸으로까지 한정되기도 하고 내외에 관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금제조항이 성립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외법이 처음 규정될 때 내외할 대상은 일차적으로 근친간이었으나 점차 친족의 범위에 있지 않은 제 3 자와의 관계로 확대되어 남녀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애초에 금지하는 규제로 강화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외법은 대체로 16, 17세기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중종연간에 이르러 사회에 정착되어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sup>27)</sup> 이때는 건국 후 150여년이 지나 성리학적인 윤리관이 널리 일반에 보급된 시기이기도 하고 예학논의의 결과 四禮에 관한 예서들이 활발하게 저술된 시기이기도 하다.

### 2) 조선 후기 예학의 발달에 따른 내외법의 확산

16세기 후반 종법을 기반으로 하는 정통론이 심화되면서 예학의 강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가례에 대한 수용 범위는 지방에 있는 양반신분층에 까지 확장되었다. 즉 16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림이 중소 지주적인 배경으로 지역적 안정과 질서를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유교의 의례로서 가례를 수용한 것이다.<sup>28)</sup> 이들은 당시 불교나 민간신앙적인 전통적 생활관습에 유교적 생활규범을 보급하기 위해 먼저 제례에 관한 가례서를 저술하였고 계속하여 상제례서를 저술하였다.<sup>29)</sup> 이 시기에 조선은 임진왜란의 발발로 인해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유교적 생활관습에 타격을 받게 된다. 임란 후 무너진 사회경제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예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관혼상제례를 모두 포함하는 사례서로서 조선 예학의 宗匠이라 칭해지는 김장생이 『家禮輯覽』을 완성하였고 이는 1685년(숙종11) 간행되었다. 『가례집람』은 주자의 『가례』는 물론이고 조선의 俗制를 포함시킴으로서 실용성도 배려한 가례서이다.<sup>30)</sup> 이후 관혼상제로 대별되는 四禮는 사립들의 향촌지배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게 되었다.

또한, 조선 명종 때 박세무(朴世茂)가 지은 동몽 선습<sup>31)</sup>, 선조 시기의 소학언해와 같은 교육서들도 유교윤리의 보급에 일조하게 된다. 동몽선습은 어린이 교재로 지어진 것으로 동몽선습으로부터 소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오륜을 익히게 된다.

이와 같이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심화되는 예학 연구 및 예서의 간행을 통해 조선 후기에는 내외법이 뿌리를 내린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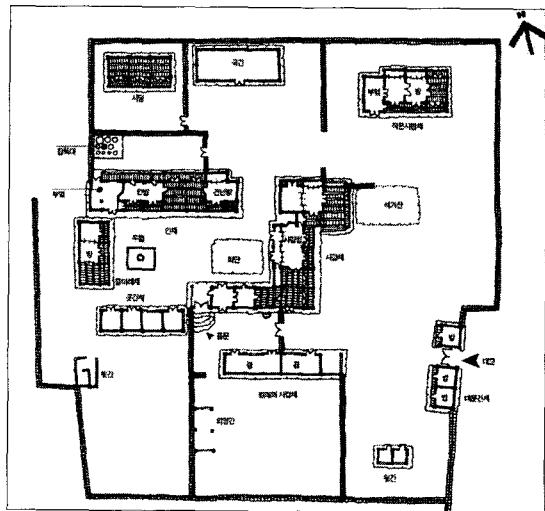
#### IV. 조선후기 내외법의 영향을 받은 남녀 복식생활의 특징

##### 1. 집안 공간에서 내외의 구별

###### 1) 일상생활공간으로서의 사랑체와 안체

예기에서 비롯된 주택에서의 남녀 공간 사용의 구별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태종실록에 부부별침(夫婦別寢)을 명하는 것<sup>32)</sup>으로서 주택건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세기까지 사대부 남성들은 주로 주택의 봄채에서 부인과 함께 기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sup>33)</sup> 남성의 공간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4)</sup>

그러나 16세기를 거치면서 예학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17세기 이후 예제적 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男左女右의 성별에 따른 차서체계(次序體系)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대청의 동쪽에 남성의 생활공간인 사랑을 배치하고, 그 서쪽에 여성의 생활공간인 안방과 부엌을 배치한 형태로 건물을 정형화하기 시작하였고<sup>35)</sup>,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구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예컨대 현재 남아 있는 종가의 거주자를 통한 질적 연구에서 주요한 일상생활로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안주인의 공간인 안방(큰방)에서 모였으나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식사를 하였다.<sup>36)</sup> 기거취침에 있어서 가족 간에도 남녀에 따라 장유에 따라 다른 공간을 이용하였는데 가족 중 남자들은 사랑체에서, 여자들은 안체에서 생활하였다. 시조부님은 큰사랑방, 시아버님은 작은 사랑방, 종손은 외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들르



<그림 1> 16세기 정여창 가옥 형태

면 건년방에서, 시조모님은 아래채방, 시어머님은 정침(안채)의 큰 방, 며느리는 건년방에서 기거취침을 하였다고 한다. 뒷간 사용에 있어서도 남자들은 사랑뒷간을 사용하고 여자들은 안뒷간을 사용하는 남녀의 구분을 두었다고 한다.<sup>37)</sup>

집안 내에 있었던 이러한 남녀의 구별은 외부인이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적용되었다. 이능화는 “손님이 와서 문득 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하고 부르는데 그 요지는 먼저 종을 나오라고 하여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가난한 서민의 경우에도) 마침 그 집 주인이 외출이라도 하였을 경우면, 종이 없는 경우면, 부득이 내실 부인이 그 낮을 숨기고 「사랑방 양반 아니 계시다고 여쭈어라」하고 소리 전하니, 마치 제삼자에게 명하듯 말하였다”<sup>38)</sup>라고 적고 있다. 집 안에 있어도 외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내외의 풍속은 조선시대에 성행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을 치고 대화하였다.

###### 2) 사회생활공간으로서의 사랑체

16세기 이후 주거의 평면구조가 안체에서 사랑체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6세기는 각 지방의 사대부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한편 본격적인 향촌의 지

배세력으로 자리 잡는 시기였다. 이 때 사랑채는 성리학적 사고를 키우고 자연과 융합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講學空間의 성격과 혈연 혹은 문벌 간의 의견을 모으는 접객공간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sup>39)</sup> 그런데 예제가 확립되어 확산되는 17세기에는 제사를 받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손님의 구성도 제사를 위해 모인 친족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16세기에는 그보다는 인접지역의 관리나 학문적 자문을 구하는 문인, 예의 설행을 구하는 인근 주민, 승려, 노비 등 그 지위나 계층에 관계없이 다양했다. 당시는 집안의 남자 주인이 주로 부인과 함께 주택몸채의 내방에 기거하여 친밀도나 중요도가 높은 손님은 남성일지라도 몸채(안채)에서 접객하기도 하였다.<sup>40)</sup> 그러나 17세기 이후가 되면 남자와 장자중심의 제사제도의 정착으로 인해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주로 규모가 커진 사랑채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모이게 되었다.<sup>41)</sup> 종가의 구술면담을 통해 큰사랑방에서 주로 이루어진 손님접대에서 좌담, 글쓰기, 시조 읊기, 바둑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채는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폐쇄적 성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sup>42)</sup>

### 3) 의례공간으로서의 사랑채와 안채

의례공간으로의 남녀유별의 공간사용의 예는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사회전반에 정착되는 가례에 따라 관혼상제례의 행례규범 속에서 볼 수 있다. 가례의 행례에 있어서 사당이 상징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관혼상제례의 행례공간으로는 정침, 즉 안채가 중심이다.<sup>43)</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행례절차는 예서를 따르지만 공간이용은 전통적인 생활풍속과 내외사상과 결충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관례와 계례의 행례공간을 볼 때 남자의 관례는 사랑채를 중심으로, 여자의 계례는 정침에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 내외사상에 의해 남녀의 생활 공간의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sup>44)</sup> 다음으로 혼례에서의 행례공간을 보면 우리나라의 혼인 풍속은 주자의 『가례』에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동

반하고 본가에 돌아와 혼례식을 올리는 친영의 절차가 중국과 달라서 혼례식을 신부집에서 올리는 전통이 뿐리 깊게 남아 있었다. 따라서 실제로 행해진 혼례는 신부집 안채의 안마당에 자리를 깔고 병풍을 친후에 상을 놓고 신랑은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위치하여 대례를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는 혼례 때에는 내외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오래된 관행상 잔치의 의미로 안채를 개방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주자의 『가례』를 우리나라 풍속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시행하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상례와 제례의 경우 여성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안채가 주행례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외부인의 안채로의 출입이 빈번해지게 되자 점차 사랑을 증축하거나 사랑채로 별도로 신축하여 時祭와 차례와 같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랑채를 제례의 공간으로 이용하였으므로 내외의식에 의해 공간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sup>45)</sup>

## 2. 복식생활에서 내외의 구별

남녀구별 또는 내외법의 영향으로 조선후기의 남녀 복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는다면 남녀의 복식이 동형구조에서 이형구조로 변화하여 확연하게 구별짓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인우(1999)는 16·17세기 출토복식의 종류와 형태를 통해 남녀 의복의 구성체계가 동형구성 의복에서 이형구성으로 변하고 남성복은 포류중심으로, 여성복은 저고리 중심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sup>46)</sup> 복식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남녀간의 구별이 이전 시기 보다 강화됨과 동시에 복식생활에 있어서도 남녀간 내외의 경향이 강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내외용 쓰개의 발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전기의 동형의 구조에서 조선후기의 남녀 이형의 구조로 바뀐 예를 복식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남녀 이형으로 발달한 경우, 남녀별로 다른 종류를 분화 발달시킨 경우, 남녀 복식생활에서 내외가 강화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복식구조에서 남녀 이형 발달

### (1) 남자 사폭바지의 발달

기존의 한국복식사에서 남자바지는 현재의 바지와 같은 사폭바지의 형태일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분묘의 이장이나 개장을 통해 발굴되는 출토유물들을 통해 임진왜란 이전에는 남자의 바지가 여자의 속바지 형태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47)</sup> 다시 말해서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 전까지는 남녀가 같은 유형의 밑이 막힌 합당고형 바지와 밑이 트인 개당고형 바지를 착용하였고,<sup>48)</sup> 이후에는 남자는 사폭바지의 형태로 바뀌고 여자는 이전 형태를 유지하여 속옷으로 착용하였다. 이를 뒷받침 하는 문헌 기록으로 먼저, “본국의 바지는 넓고 커 비용이 많이 든다. 중국의 바지는 세 폭이면 된다.<sup>49)</sup>”라는 세종실록의 기사를 통해 조선전기의 바지가 여자의 바지처럼 통이 넓은 형태였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練藜室記述』에서 “옛날에는 남녀가 모두 통넓은 바지였는데 지금은 남자는 통좁은 바지를 입으니. 이것은 선조때에 중국인에게 배워서 변한 것이다.<sup>50)</sup>”라는 기록을 통해 조선후기 남자 바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남자 바지의 변화에 대해 전쟁상황에서 넓고 거추장스러웠던 복식에 대한 반성이 생겨 신체에 적합한 복식으로의 변화가 있었고 남자의 바지는 중국에서 전래된 당고, 혹은 착고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sup>51)</sup> 이와 함께 임진왜란 전후에 체계화하는 예학 사상으로부터 남녀 동형의 복식을 남녀 이형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관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외의 관념이 어느 정도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인 16세기 후반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새로이 소개된 중국의 바지 모양을 남자 바지에 도입함으로써 바지에서 남녀 구별을 이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 (2) 여자 저고리의 당코깃 형성

조선 전기의 남녀 공통된 목판깃 형태의 겉깃이 여자 저고리의 경우 16~17세기를 경과하면서 당코깃을 형성하게 된다.<sup>52)</sup> 이전의 남녀 동일한 형태를 지녔던 저고리가 당코깃의 여자저고리의 형태를 형

성하면서 저고리의 구성에서 남녀를 구분하게 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후에 남녀 저고리 모두 칼깃으로 변화되는 것은 다시 고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 2) 특징적 부분에서 남녀별 분화 발달

### (1) 남자 편복포와 편복관의 발달

조선시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로 하여 남자 포의 변화가 큰 것을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조선 후기의 남자복식에서는 회화자료나 유물자료을 통해 편복관(便服冠)과 편복포(便服袍)가 발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다양하게 분화하여 발달하는 남자의 편복관과 편복포가 내외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복식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공간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의 빈번한 제례와 접객의 사회생활이 남성공간인 사랑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남자의 사회성이 강조되고 이로 인해 편복포의 분화 발달로 연결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여자 속옷류의 발달

조선후기의 여성은 속옷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게 되는데 이는 남자의 경우 외의인 포류가 다양하게 분화 발달하는 점과 대조되는 현상으로 여성은 은폐를 과장하기 위해 속옷을 더욱 많이 겹쳐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속옷이 다양하게 분화발달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여성의 실루엣은 많이 겹쳐 입은 속옷에 의해 치마가 부풀려지게 되어 하후상박 형태를 띠게 된다.

## 3) 외부생활에서 蔽面 강조

조선 전기에 일상적으로 입는 포류였던 장의(長衣)를 조선후기에는 내외용 쓰개인 장옷으로 착장법을 바꿈으로써 일상 복식생활에서 남녀 간 내외를 강조하게 된다. 조선 전기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장의는 남녀 공용으로 착용하였다. 이는 문헌기록에서 장의를 입는 것으로서 남녀가 구분되지 않기 때

문에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과<sup>53)</sup> 출토유물에서 남녀 장의의 유물이 치수의 차이만 있을 뿐 형태는 같다는 점에서 남녀가 같이 입었다는 것, 여자용으로 보이는 솜을 넣어 누빈 장의가 넓은 흔적 또는 착용의 결과로 보이는 오염흔적 등이 보이기 때문에 방한용으로 착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54)</sup>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내외법이 강화되면서 폐면용 쓰개로 사용되게 된다. 남녀가 내외할 것은 태조 때부터 강조되어 내외하지 않을 대상을 극도로 한정시키고 여성의 외출을 금지시키자는 주장이 나온다.<sup>55)</sup> 이와 함께 내외를 위하여 여성의 얼굴을 가릴 것 역시 논의되었는데<sup>56)</sup> 사대부 여성의 경우는 옥교자(屋轎子)를 타도록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서민 여성의 경우는 장옷을 입지 않고 쓰개 된 것으로 보인다. 장옷 이외에도 폐면용 쓰개로 고려시대로부터 전해오는 상류층 전용의 너울과 쓰개치마, 삿갓 등이 있었다. 폐면을 위해 장옷을 착용하였다는 것은 유득공의 『경도잡지』에서 “여염집의 부녀들은

녹색의 규의를 입는다. 그러나 길에 나갈 때에는 따로 하나의 옷으로 머리를 가린다.”를 통한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sup>57)</sup> <그림 2>와 같이 조선후기의 풍속화에서 착장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3> 김홍도筆 路上破顏



<그림 2> 신운복筆 風俗圖



<그림 4> 김홍도筆 路上風情



〈그림 5〉 귀부인의 외출



〈그림 6〉 시장의 여인들



〈그림 7〉 평양부근 부인의 외출

〈표 1〉 내외법이 조선후기 복식생활에 미친 영향

고대 동양의 남녀구별	조선초기	16·17 세기	조선후기 복식생활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분의 차이와 상호존중의 '別'</li> <li>차별적 개념의 '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五倫</p> <p style="text-align: center;">→三綱</p>	경국대전에 금제로서 구체화 (내외법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학의 발달</li> <li>전 국민에게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안 공간에서 내외의 구별</li> <li>복식 생활에서 내외의 구별</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식 구조에서 남녀 이형 발달</li> <li>특정적 부분에서 남녀별 문화 발달</li> <li>외부 생활에서 蔽面 강조</li> </ol>

그런데 조선후기에 김홍도(1745~1806이후)의 행여풍속도 중에는 노상에서 남녀가 마주치는 장면에서 장옷을 쓴 여자의 반대편을 지나가는 남자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 있다(〈그림 3〉, 〈그림 4〉). 장옷을 쓰게 되는 것과 부채로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은 남녀의 내외를 위해 특별히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내외 풍속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내외의 풍속 혹은 규제는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남녀가 서로 간에 바람직한 예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장옷을 폐면용 쓰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개화기의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이 높은 여성들은 옥교자를 텁으로써 신체의 일부도 노출시키지 않지만 일반 여성들은 장옷을 쓰거나 평안도의 경우에는 방갓을 쓰고 다니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림 5〉는 1890년경 서울의 거리 풍물로 소개되었던 사진으로, 2명이 드는 가마에 마

님이 앉아 있는데 가마 안의 부인이 창밖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은 사진사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sup>58)</sup> 이에 대해 일반 서민 여성들은 <그림 6>과 같이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그림 7>과 같이 개성이 복의 경우에는 방갓을 쓰고 다니기도 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sup>59)</sup>

이처럼 조선후기에 내외법의 영향은 남녀의 복식 생활에서 최대한 형태를 구별하고 다른 성을 위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예를 지키려는 방향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남녀구별 예의식, 다시 말해서 내외법이 조선후기 복식생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표 1> 같다.

##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남녀유별 예의식 다시 말해서 내외법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남녀의 복식구별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양의 우주론으로서 음양오행설에서 시작된 남녀에 대한 구별 의식이 애초에는 존비의 개념이 아닌 구별의 개념으로서 직분에 따른 상호존중의 의미였다. 그러나 중국의 한대에 들어오면서 음보다는 양을 중요시 하는 변화에 따라서 남녀유별, 부부유별 의식은 남존여비 의식으로 바뀌어 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고시대부터 남녀에 대한 구별의 개념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고려시기까지는 친족 집단 공동체가 아니라 부모계 뿐만 아니라 처계까지도 아우르는 혼재된 혈연 공동체적 내용이 사회생활을 이끌었던 기본적 질서였다. 고려 말에 주자의 『가례』가 들어오고 이후 조선이 건국되면서 주자의 『가례』가 윤리의 정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남존여비의 이념을 담은 삼강과 남녀의 직분별 구분을 담은 오륜이 동시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에는 유교적인 윤리의식에 적합하지 않는 생활로 인해 남녀를 구별하는 예의개념이 여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내외법으로 빈번하게 논의되었고 이는 경국대전에 금제의 규정으

로 성립되게 되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에 이르기 까지 각종 일상생활의 의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예서들이 활발하게 저술되고 이러한 관념들이 향촌으로까지 보급됨으로써 유교적 생활양식이 조선 전체 사회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학의 발달 중에서도 내외법과도 상관성이 있는 주자의 『가례』에서 규정된 행례절차에서 남성공간과 여성공간의 구별이 조선의 생활에 맞도록 재구성함으로써 일상의 생활공간에서도 남녀의 구별을 철저히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16세기 이후 정착하게 된 각종 의례의 영향으로 사대부 남성들의 접빈공간, 토론공간으로서 사랑채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이는 다시 사대부 남성의 편복관과 편복포의 다양한 문화 발달을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을 겪으면서 이전에 동형이었던 남녀 바지가 중국의 바지를 도입한 남자의 사폭바지와 기존의 속바지 형태의 여자바지로 분화되었다. 한편 안채에서의 생활로 어느 정도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되는 여자들은 밖으로의 출입시에 가마를 타거나 장옷과 같은 내외용 쓰개를 착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 전기 동형의 복식들이 남자의 사폭바지와 여자 저고리의 당코깃과 같이 부분적인 구성법을 달리하기도 하고, 내외용 쓰개인 장옷으로 차장방식을 다르게 분화시키기도 하며, 남자의 경우는 포류로 여자의 경우에는 속옷류로 당시에 중요시 되었던 특성을 보다 강조하면서 발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남녀를 차별하는 유교의 폐단을 지적하여 이로 인해 나타나는 남녀 복식의 구별만을 강조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남녀 간 성별의 차이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직분간 차이를 상호존중하여 이를 일상생활에 반영하고자 한 조선시대의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남녀 의생활의 일면을 해석해 보고자 한 시도였다.

## 참고문헌

- 1) 김득중 (1997). 실천예절개론. 서울: 교문사, p. 46.
- 2) 정옥자 (1990). 17세기 전반 禮書의 성립과정-金長生을 중심으로-. 동양문화 11, p. 407.

- 3) 柳肅 저. 洪熹 옮김 (1994). 禮의 精神. 서울: 동문선, p. 26, 이 책에서 저자는 「예기」「樂記」를 인용하여 예와 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4) "... 대개 의상(衣裳)의 제도는 남녀와 귀천을 분별하려는 소이이니...", 조선왕조실록 CD ROM 간행위원회 (1995). 國譯朝鮮王朝實錄. 서울시스템주식회사, 세조실록 권3 세조2년 3월 정유조.
- 5) naver 사전.
- 6) 이순구 (1988). 朝鮮初期 內外法의 成立과 展開. 청계사학 5, p. 115.
- 7) 김시황 (2000). 夫婦有別과 同尊卑. 동양예학, p. 262.
- 8) 김승혜 (1998). '夫婦有別'의 해석학적 역사와 현대적 전망. 공자학 4호, p. 55.
- 9)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 有憂之 使契 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車柱環 (2002). 孟子. 서울: 명문당.
- 10) 김승혜. 앞의 논문, pp. 57~28.
- 11) 男不言內 女不言外 非祭非喪 不相授器.. 内外不共井 不共溫浴 不通寢席 不通乞假 男女 不通衣裳...男子.. 夜行以燭 無燭則止 女子 出門 必擁蔽其面 夜行以燭 無燭則止 道路 男子由右女子由左.
- 12) 禮 始於謹夫婦 爲宮室 辨外內 男子 居外 女子 居內 深宮固門 闔侍守之 男不入 女不出
- 13) 六年 敎之數與方名 七年 男女 不同席 不共食...
- 14) 凡男 拜 尚左手... 凡女 拜 尚右手
- 15) 신정근 옮김 (2006). 동중서의 春秋繁露, 춘추-역사해석학. 경기도: 태학사, pp. 564~565.
- 16) 반고 저. 신정근 역주 (2005). 백호통의. 29편 三綱六紀, 제40편 嫁娶 참조.
- 17) 김승혜 (1998). 앞의 논문, pp. 66~68.
- 18) ...嫁娶禮俗 男女有別...
- 19) ...男女有別...
- 20) 이범준 (2004). 朝鮮時代 禮學研究. 국학자료원, 유교이념과 가족윤리 참조.
- 21) 이범준 (2004). 앞의 책, p. 410.
- 22) 정정남 (2004). 「眉巖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사대부 주택의 客廳.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대회논문집, p. 133.
- 23) 신복룡 (2002). 신복룡 교수의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서울: 풀빛, pp. 100~101.
- 24) 세종실록, 세종 11년 2월 신사조.
- 25) 국역 경국대전 형전 금제조.
- 26) "내외하는 습성을 고칠 일", 「帝國新聞」, 1907. 10. 11에서는 시의에 맞는 내외법의 개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자가 문밖 출입할 때 부모형제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신임하는 하인의 동행이 없을 때는 나가지 않는다. 출가한 부인은 친정 시집의 부모형제나 남편 또는 가까운 친척이나 신임하는 하인의 동행 없이는 나가지 않는다. 단 위의 두 경우 외출시에는 절대로 교자를 타거나 장옷을 입지 않는다. 집에 손님이 올 때는 남편이 있으면 내실이건 사랑이건 어디든지 청하여 들어 부인도 함께 대하고 웃고 말한다. 단 남편이 없을 때는 찾아간 손님도 堂'에 올라서는 안 되고 부인도 영접해서는 안 된다.' 유수경 (1991). 한국여성양장번천사. 서울: 일지사, p. 49에서 재인용.
- 27) 이순구 (1988). 앞의 논문, pp. 131~132.
- 28) 이범준 (2004). 앞의 책, p. 407.
- 29) 고영진 (1991). 16세기 말 四禮書의 성립과 禮學의 발달. 한국문화 12, p. 470.
- 30) 정옥자 (1990). 앞의 논문, p. 424.
- 31) 天地之間萬物之衆 惟人 最貴 所貴乎人者 以其有五倫也. 是故 孟子曰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人而不知有五常 則其違禽獸不遠矣 然則父慈子孝 君義臣忠 夫和婦順 兄友弟恭 朋友輔仁然後方可謂之人矣.
- 32) 태종 3년 5월 27일, "오부(五部)에 영(令)을 내리어 부부가 침실(寢室)을 따로 하게 하였으나, 예조(禮曹)에서 월령(月令)으로 청한 것이었다."
- 33) 정정남 (2004). 16세기 사대부의 개인거처마련과 相宅. 한국 건축역사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 182.
- 34) 정정남 (2004). 위의 논문, p. 179.
- 35) 이호열 (2003). 한국건축사 연구1 - 분야와 시대와 발언. 반가편, p. 211.
- 36) 박선희 (1992). 조선시대 班家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대한 연구. 건축사연구 1(2), p. 44.
- 37) 박희영, 이희봉 (2003). 상류 전통주거 居昌 駐계(桐溪) 정온(鄭蘊) 종택의 공간과 생활의 복원을 통한 해석. 건축역사연구, 12(3), pp. 140~141.
- 38) 이능화 (1926). 朝鮮女俗考. 婦女內外法 편
- 39) 윤일이 (2005). 儒教 受用에 따른 傳統住宅 男性空間의 變遷에 관한 比較研究-中韓 日 上流住宅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4(1), p. 128.
- 40) 정정남 (2004. 11). 앞의 논문, pp. 132~133.
- 41) 정정남 (2004. 5). 앞의 논문, p. 139.
- 42) 김종현 (2002). 안채, 사랑채의 재해석을 통한 職住統合型 住居 類型 開發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11(29), p. 24.
- 43) 김기주, 김성우 (1995). 冠婚禮를 중심으로 본 朝鮮時代 班家에서의 行禮規範과 空間使用. 건축역사연구, 3(2), p. 57.
- 44) 김기주, 김성우 (1995). 앞의 논문, pp. 6~9.
- 45) 김기주, 김성우 (1995). 앞의 논문, p. 62.
- 46) 장인우 (1999).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복식연구, pp. 48~50.
- 47) 이은주 (1998). 판결사 김홍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보고서, p. 218. 영주시: 이은주 (2000). 안동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대박물관, p. 241; 이은주 (2003). 동래정씨 흥곡공 일가 남자묘에서 출토된 복식류. 경기도 박물관, pp. 172~174; 구남우 (2002). 조선시대 남자바지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52(7).
- 48) 구남우 (2002). 앞의 논문, p. 46.
- 49) 세종13년 8월 戊午 本國之袴 寬大故多費 上國之袴 三幅可縫
- 50) 이궁익. 練藜室記述. 古者男女皆闊袴 今男則窄袴 此於宣朝之世 學唐人而變者也

- 51) 이은주 (2003). 앞의 논문, 구남옥 (2002). 앞의 논문.
- 52) 장인우 (1999). 앞의 논문, p. 42.
- 53) 세조실록 권3 세조2년 3월 정유조, 집현전 직제학 양 성지의 상소 중 “복요(服妖)를 금하는 것입니다. 대개 의상(衣裳)의 제도는 남녀와 귀천을 분별하려는 소이(所以)이니, 하민(下民)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 안의 여자들이 장의(長衣) 입기를 즐겨 남자와 같이 하나, 그러나 장의를 입상(衣裳)의 사이에 입어 3층을 이루게 하고 점점 서로 본따서 온나라가 모두 그려하니... 여자가 남복을 입는 것도 또한 어찌 경사로운 징조라 하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마음대로 한다면 남녀의 의복은 스스로 제도를 같이 하여 이르지 않은 바가 없을 것이니...”  
성종실록 권13 성종2년 12월 임진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무릇 의복의 제도는 남녀를 분별하고 존비를 등급 짓는 것이다. 근일에 부인이 남복(男服) 입기를 좋아하여 남자와 구별이 없으니, 그것을 금하게 하라.”
- 54) 박성실 (1992). 조선 전기 출토복식 연구-임진왜란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44~445.
- 55) 태조실록 권2 태조1년 9월 기해조 대사헌 남재의 상소문, “지금부터 문무 양반의 부녀자들은 부모, 친형제, 친자매, 친백부, 친숙부, 친외숙, 친이모를 제외하고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로잡으소서.” 태종실록, 태종4년 5월 25일 예조의 건의 “예(禮)를 상고하면 부인의 중문(中門)을 나오면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행(行)하면 병거(耕車)를 타니 혐의(嫌疑)를 분별하고 방한(防閑)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부녀자가 나들이를 하려면 평교자(平轎子)를 타는데, 종들로 하여금 사면에 부축하게 하고, 막고 가린 것이 없어서 복례(儀隸)와 더불어 웃깃을 접하고 어깨를 비비게 되니, 흥허물이 없이 가까이하고 업신여기어 식자(識者)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인데,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였으니, 어찌 편전(闕典)이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3품의 정처(正妻)는 지붕이 있는 가마(轎子)를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말을 타고 평교자를 타지 못하게 하소서.”
- 56) 태종실록 권28 태종14년 11월 병진조 “부녀자의 입모(笠帽)는 그 전첩(前簷)을 말아 올리고 부채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이를 드리워서 그 얼굴을 감싸서 가리우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태종16년 8월 20일 사간원 상소문, “부인은 밖에 일이 없고 오직 중궤(中餽)를 주관할 뿐인데, 사대부의 부인이 가마나 말을 타지 않고 길에 도보로 다니니... 이제부터는 부모와 서로 만나 보는 외에는 출입을 하지 말고, 또한 마을 거리에 도보로 다니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꾸고 어기는 자는 현사(憲司)에서 규리(糾理)하게 하소서.” 세종실록, 세종11년 2월 5일, “양반의 부녀자로서 모첩을 견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세종실록, 세종12년 8월 15일 예조의 건의, “고례(古禮)에 부인들이 외출할 때는 얼굴을 가렸사온데, 지금은 부인들이 모관(毛冠)을 쓰고 얼굴을 드러내 놓고 길을 다니니, 옛날 법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57) 유득공. 京都雜誌, 間巷婦女綠桂衣在街上另用一衣幕首.
- 58) 안동대학교박물관. 사진으로 보는 조선 1892년, pp. 82~83.
- 59)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p. 307; 서문당,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생활과 풍속, p. 163.

## 그림의 출전

- 〈그림 1〉 신영훈글 김대벽 사진(2002). 한복의 향기, 대원사, p. 54.
- 〈그림 2〉 신윤복. 蕙園傳神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그림 3〉 김홍도. 檀圓風俗畫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그림 4〉 김홍도. 行旅風俗圖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광주박물관 (2002). 조선시대 풍속화, 도록, p. 78.
- 〈그림 5〉 안동대학교박물관 (1997). 사진으로 보는 조선 1892년, p. 83.
- 〈그림 6〉 서문당 (1987).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속 생활과 풍속, p. 82.
- 〈그림 7〉 부산근대역사관 (2003).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p. 307.